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
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8월 14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관 권오규

● 대통령령 제19643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시·군·자치구”를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자치구”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사용·수익허가) ①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이하 “사용·수익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2.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그 밖에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인 사용료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에 의하여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④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2.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로 사용·수익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26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용료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6.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7.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16316호

관

부

2006. 8. 14. (월요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8.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⑥입찰공고에는 해당 재산의 사용료예정가격 등 경쟁입찰에 부치려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신청자에게 공고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관리청은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료예정가격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

1. 3회차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하한으로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인근 토지·건물 등의 임대료 수준보다 크게 높아 제1호에 따라 사용료예정가격을 낮추어 입찰을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결정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을 사용료예정가격으로 하는 방법

제27조의2 단서중 “제2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의 방법으로”를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관리 처분”을 “관리·처분”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변상금”을 “변상금(이하 “귀속금”이라 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신탁수입 또는 변상금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귀속금을”로 하며,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귀속금의 범위 안에서 관재활동비(국유재산을 총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잡종재산의 처분을 위한 입찰의 성립)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은 1개 이상인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에 의하여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35조의 제목중 “붙일”을 “부칠”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붙여”를 “부쳐”로 하며, 동조제1호중 “붙일”을 “부칠”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붙일”을 “부칠”로 한다.

ㄱ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본문중 “붙이기”를 “부치기”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을 “유효한 입찰”로 한다.

제37조제1항 단서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1천만원”을 “1천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잡종재산을 법 제33조에 따라 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에 2회 부친 결과 해당 잡종재산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80(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관리계획에서 정한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하한으로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

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0조에 따른”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교환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57조제4항 본문중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3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직접 조사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직접 조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한 경쟁입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4조의2 및 제36조

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정평가대상 재산가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 단서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제4조(매각예정가격 체감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의 개정규

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환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무주·은닉부동산 신고시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보상금 분부터 적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관리 및 매각절차를 보다 합리화하기 위하여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입찰절
차를 간소화하고, 국가가 보존·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의 경우 매각가격의 최저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관리비용이

보존비용보다 많이 드는 국유재산의 매각을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및 매각 절차의 합리화(영 제24조제3
항, 영 제34조의2 신설)

- (1) 현행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
거나 매각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입찰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
한 입찰이 성립하도록 함에 따라, 사용료예정가격 또는 매각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이 있음에도 입찰자가 1인이라는 이유
로 유찰되고 유찰횟수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이 체감(遞減)되
어 국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
할 필요가 있음.

- (2) 1인이 입찰하더라도 사용료 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
찰한 때에는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도록 함.

- (3) 국유재산의 입찰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의
및 처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고수입 증가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시 매각가격 최저한도의 조정(영 제37
조제4항)

- (1) 노후화된 건물 등 보존이 불필요한 재산의 경우 국유재산으로서의 보존가치에 비하여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 보존부적합 재산을 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를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50까지로 낮춤.
 - (3) 보존부적합 재산의 원활한 매각을 촉진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됨.
- 다. 국유재산과 공유·사유재산과의 교환요건 완화(영 제46조제2항 단서 신설)
- (1) 국유재산과 공유·사유재산을 교환하기 위하여는 교환하는 재산 간의 가격차이가 4분의 1 미만이어야 하나, 흩어져 있는 소규모 국유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국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하는 재산 간의 가격차이가 2분의 1 미만이면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제한요건을 완화함.
 - (2) 교환을 통한 소규모 국유재산의 집단화를 촉진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가치 증대와 재산관리의 효율화가 기대됨.

<법제처 제공>

부 령

●외교통상부령 제68호

재외공관주재관및주재무관의대외직명예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6년 8 월14일

외교통상부장관 인

재외공관주재관및주재무관의대외직명예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공관주재관및주재무관의대외직명예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외공관주재관및주재무관의대외직명예관한규칙”을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외무공무원법 제24조와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을 “「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으로 하고, “주재관 및 주재무관”을 “주재무관”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중 “별표 2”를 “별표”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삭제하고, 별표 2를 별표로 한다.